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8-1-2

규정번호 8-1-2
제정일자 2009.2.26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24차 개정
관리부서 평생교육팀

[규정명칭 변경 2018.8.27.,2025.3.31.,2025.6.23]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본부(이하 "교육본부"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2 조(교육목적) 교육본부는 우리대학의 교육이념에 기초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21세기에 적합한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3 조(교육과정) 교육본부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둔다.(개정 2018.08.27.,2025.3.31)

1. 평생교육과정
2. 특성화교육과정
3. (삭제)
4. 요양보호사교육과정(신설 2025.6.23.)
5. 기타교육과정

제 4 조(정원) 각 과정 및 세부 과정별 정원은 평생교육본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2 장 조 직

제 5 조(조직) ① 교육본부에는 평생교육팀, 성인학습지원센터, 원격평생교육센터, 명지지역상생협력센터를 둔다.(개정 2016.05.16., 2018.08.27., 2024.5.3.,2025.3.31.,2025.6.23.)

② 교육본부에는 본부장, 부분부장, 주임교수 및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5.6.23.)

제6조(본부장) ①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08.27.,2025.3.31., 2025.12.1.)

② <삭제(2025.12.1.)>

③ (항 삭제 2017.02.27.)

③ 전공별 주임교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학생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우리대학 전임교

명지전문대학 규정 / 8-1-2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원 또는 평생교육본부 전담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3.1., 2016.10.26., 2017.02.27., 2018.08.27.,2025.3.31)

④ 평생교육본부 전담교원은 학생지도 및 상담을 통한 재학생 이탈 방지와 학생모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본부 전담교원의 자격, 급여, 임용기간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3.1., 개정 2016.10.26., 2017.02.27., 2018.08.27.,2025.3.31)

⑤ 전임연구원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2025.3.31)

제 7 조(교·강사) 교·강사는 교육본부에서 위촉하되, 교·강사 자격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담당 교·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하며, 교·강사는 아래 호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본부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08., 2018.08.27.,2025.3.31)

1. 교·강사는 위촉기간 중 강의평가 점수 등 세부 사항은 강의평가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제3항 강의평가 결과 활용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2.08., 2020.02.17)
2. <호 삭제 2020.02.17.>
3.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 민원이 발생한 교·강사에 대해서는 강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2.08)

제 8 조(삭제 2015.12.03.)

제8조의2(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본부는 부설기관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5.6.23.]

제 3 장 공개강좌

제 9 조(공개강좌 승인 및 운영보고) ① 교육본부의 각 교육과정이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령에 의한 공개강좌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8.27.,2025.3.31)

1. 공개강좌명
2. 개설과목 및 기대효과
3. 자금운영계획
4. 교과목 및 교·강사
5. 교육기간 및 장소
6. 모집정원

② 교육본부의 각 교육과정의 공개강좌를 신규 개설한 경우 기획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08.27.,2025.3.31)

명지전문대학 규정 / 8-1-2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③ 본부장은 매년 각 교육과정의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9 조의 2 (수강대상) 교육본부의 각 교육과정 수강대상은 명지전문대학 재학생, 지역주민, 재직자, 일반 성인, 고등학생, 외국인, 기타 교육 수요자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31.]

제 10 조(운영지침) 교육본부 각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1 조(구성) ① 교육본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본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8.27.,2025.3.31)

②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본부장, 부분부장, 산하 센터장, 전공별 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26., 2018.08.27.,2025.3.31.,2025.6.23)

③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1., 2016.10.26., 2018.08.27.,2024.7.24.,2025.3.31)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8.27.,2024.7.24.,2025.3.31)

제 12 조(기능) 위원회는 교육본부 내 각 교육과정의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개정 2025.3.31.)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13 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평생교육팀에서 주관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17.02.27., 2018.08.27.)

제 5 장 수업연한·교육과정·이수학점·성적 및 수료

명지전문대학 규정 / 8-1-2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제 14 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각 교육과정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15 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기별로 각 교육과정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16 조(이수학점) 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각 교육과정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17 조(성적평가) 교육과정별 학업성적은 출석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결과로서, 학점 또는 수료·미수료로 구분한다.

제 18 조(수료증) ①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1호)을 수여하고, 교육과정 중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에게는 나노디그리과정, 마이크로과정 수료증(별지 제1호)을 수여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료 및 자격기준은 과정별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3.31.)

② 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별 수료자의 학적사항을 유지·관리한다.(개정 2018.08.27)

제 6 장 원생지도 및 학습비

제 19 조(포상) 교육본부 산하 교육과정 소속 원생(이하 “원생”이라 한다)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20 조(징계) 원생이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본부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우리대학 학칙에 준용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08.27.,2025.3.31)

제 21 조(원생특전) 원생에게는 우리대학 정규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학술정보원(도서관)이용 및 도서대출(개정 2018.08.27)
2. 동문 자격 부여
3. 교내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제22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7.20.)

제 23 조(학습비) ① 원생은 매학기 등록 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관리

제 24 조(재정) 각 교육과정의 재정은 학습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8-1-2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제 25 조(회계 관리) ① 각 교육과정의 회계업무는 우리대학 제규정에 따른다.

② 학습비는 총무회계팀에서 수납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③ 각 교육과정 운영예산은 총 수입의 70%이내에서 예산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예외적인 운영예산 편성의 경우 기획실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육본부의 수입은 학교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08.27.,2025.3.3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생교육원의 존속기간) 학칙 제52조의 2 제1항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의 존속기간은 201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46> <생략>

<47>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①항 및 제11조 ②항의 “팀(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고, 제24조 ②항의 “회계과”를 각각 “회계팀”으로 한다.

<48> - <49>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 전문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8-1-2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03.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에 따라 특성화교육원 특성화교육팀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8-1-2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제2항·제4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규정명칭, 제1조~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제12조, 제14조~제16조, 제18조~제20조, 제24조제4항, 별지제1호)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규정명칭, 제5조, 제11조제2항)

② 제3조제4호 및 제8조의2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별지 제1호(개정 2025.3.31.)]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우리대학 부속 평생교육본부 과정(학점)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부속 평생교육본부장 (인)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명지전문대학 총장 (인)